

#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6,700,357	12,801,011
일반회계	378,111,304	11,343,339
특별회계	48,589,053	1,457,672
공기업특별회계	29,148,147	874,44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148,147	874,444
기타특별회계	19,440,906	583,227
수질개선 특별회계	6,502,272	195,068
주택사업 특별회계	4,382,815	131,484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77,936	26,338
자활기금 특별회계	1,939,500	58,185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3,051,300	91,539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99,453	8,984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0,450	614
기반시설 특별회계	252	8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366,928	71,00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0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 한도액은 15,500,000천 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12,801,011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공무원 기준인건비
- (2) 차입금 원리금 및 이자 상환
- (3)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법정전출금
- (4) 재해대책 및 복구비